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5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 나.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2조).
-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2 신설).
- 라.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안 제34조의5).

Ⅲ. 검토의견

1. 배경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2024.3.20.)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의료공백 무마’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1년간 3.3조원이라는 지적¹⁾이 있으며, 의대 증원 정책 초기 반년간 제 때 치료 못받아 숨진 환자가 3,136명인 것²⁾으로 나타남.

또한, 의대협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국대 100%, 한림대 99% 등 대다수의 의대생이 휴학할 것이라고 응답³⁾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적생의 95%가 휴학한 것⁴⁾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금년도 2월 중 2026학년도 정원 미합의 시 2026학년도에 2024, 2025, 2026 세 개 학년의 의대생 약 12,500명을 한학년에서 교육해야 할 수도 있음.

인턴, 레지던트1년차 공백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며, 여러 학년을 한 학년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교육하게 되면 불량 의사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앞으로 평생 발생할 사회적 재난⁵⁾임.

1) ‘의료공백 무마’에 투입된 정부 재원 3조원 넘어(의학신문, 2025.2.4.)

2) 의정 갈등속 ‘병원 초과사망’ 6개월간 3136명(동아일보, 2025.2.5.)

3) 의대생 복귀 난망...건국대 100%, 한림대 99% “휴학할 것”(뉴시스, 2025.2.4.)

4) 의대생 95% 휴학... 새학기 다가오는데 복귀 안갯속(조선비즈, 2025.2.5.)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안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2. 의료과정운영학교 인증 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안 제11조의3)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증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의3(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u>의료과정운영학교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u> ⑤ <u>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u>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생략)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인정기관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⁶⁾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

6)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인정한 인정기관을 통해 그 교육 과정을 인증하는 제도임. 특히,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그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인정기관 제도는 법률에는 대강의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2024년 9월 26일, 교육부는 동 규정의 일부개정령안⁷⁾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불인증을 받을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 부여 의무화, 평가 인증기준 변경 시 사전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을 변경 시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학교에 알리는 사전예고제 도입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개정령안에 의료계는 이를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교육부공고 제2024-345호

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규제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적 쟁점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좌우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사안이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보다 그 제도의 유연성, 대응성 등이 강조되면 이를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보장 여부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동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안 제32조)

개정안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특히 의과대학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제32조(학생의 정원) ① ----- ----- ----- -----

현행	개정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 . 다만,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u> <u>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u> <u>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u> <u>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u> <u>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u> <u>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u> <u>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u> <u>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u> <u>4. 국립학교의 정원</u> <u>5. 공립학교의 정원</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u>

현행	개정안
<신설>	목의 모집단위별 정원 중 의과 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의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과대학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각 절반씩 추천하는 의사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대학의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되,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그러나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장과 협의할 것만을 규정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 임의의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논의하였음.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하여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5월 10일까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배정심사위원회가 3월 14일 구성되어 18일까지 운영됐고, 회의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별 배정 과정이 이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는 비상설, 비법정 위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 9)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원회로 공공기록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다만, 회의록 작성은 되지 않았으나, 회의요지는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배정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배정심사위원회의 의사 위원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각 절반씩 추천하는 의사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대 정원 논의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특례 (안 제32조의2)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2조의2(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u>

2024년 의료대란 사태로 1년간 의대생들이 사실상 수업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과 2024학년도 입학생들은 동시에 한 학년에서 같은 과정을 수강해야 할 상황에 놓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의 교육여건으로는 두 학년도 학생을 모두 교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5년도 의대증원 관련 예산은 증원이 이루어진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도권 소재 8개 의대 또한 두 학년 학생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임.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바,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¹⁰⁾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엄격히 규정(안 제34조의5)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에 “등”과 같이 재량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0)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단서 삭제>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현행	개정안
	<u>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u>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령상 변경 사유 중 제2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2025학년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2024년에 공표하였음.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그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등”과 같은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시행계획 변경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